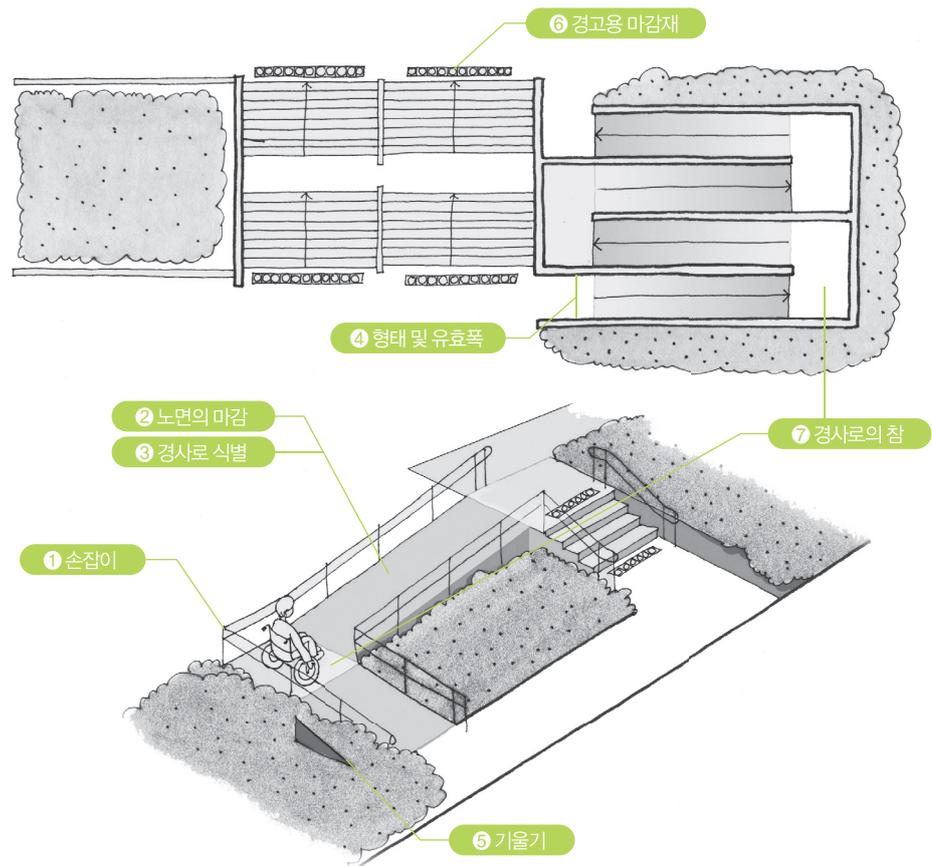


6. 경사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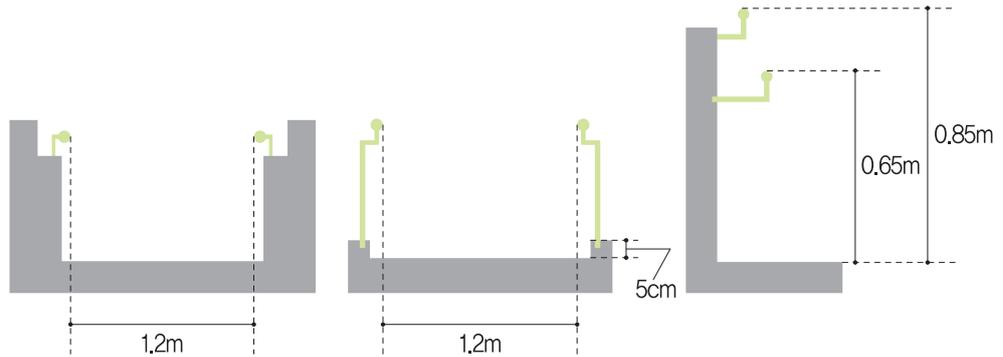


■ **설치원칙** 경사로는 휠체어가 보도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에 매우 좋은 대안이다.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.

- **설치요점**
-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한 기울기, 폭, 바닥의 마감상태, 휴식참, 손잡이 등에 대한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다.
 - 경사로만으로 층간 이동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고 특히, 시각장애인 등에게 불리하므로 계단과 병행 설치하는 것이 좋다.
 - 경사로를 대피로로 사용하기에는 배연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피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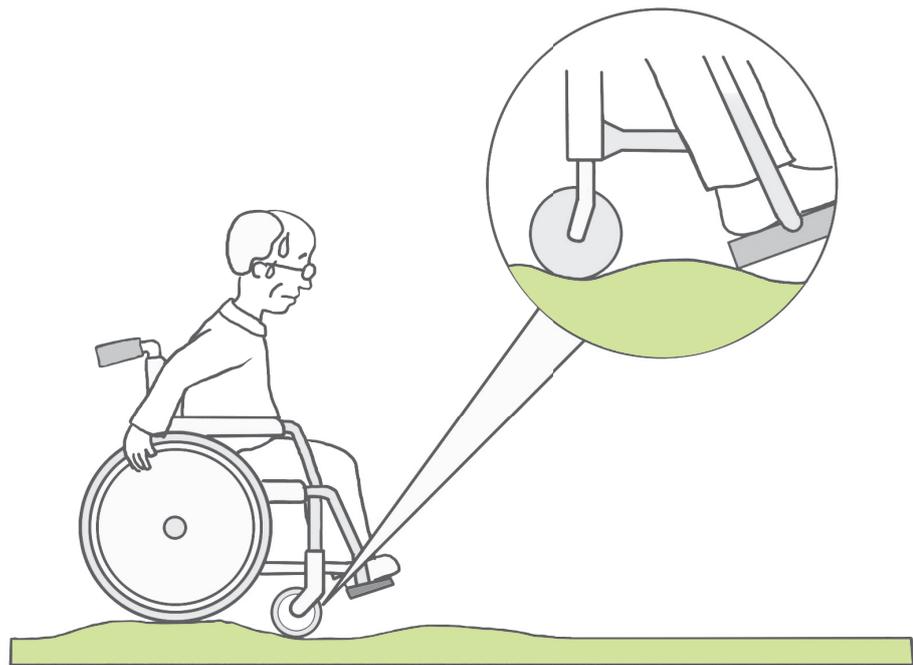
1) 손잡이

- 경사로 길이가 1.8m 이상 또는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0.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한다.
-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0.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연장하여 설치한다.
-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85m±5cm 이내로 하고, 손잡이의 지름은 3.2cm~3.8cm 이내로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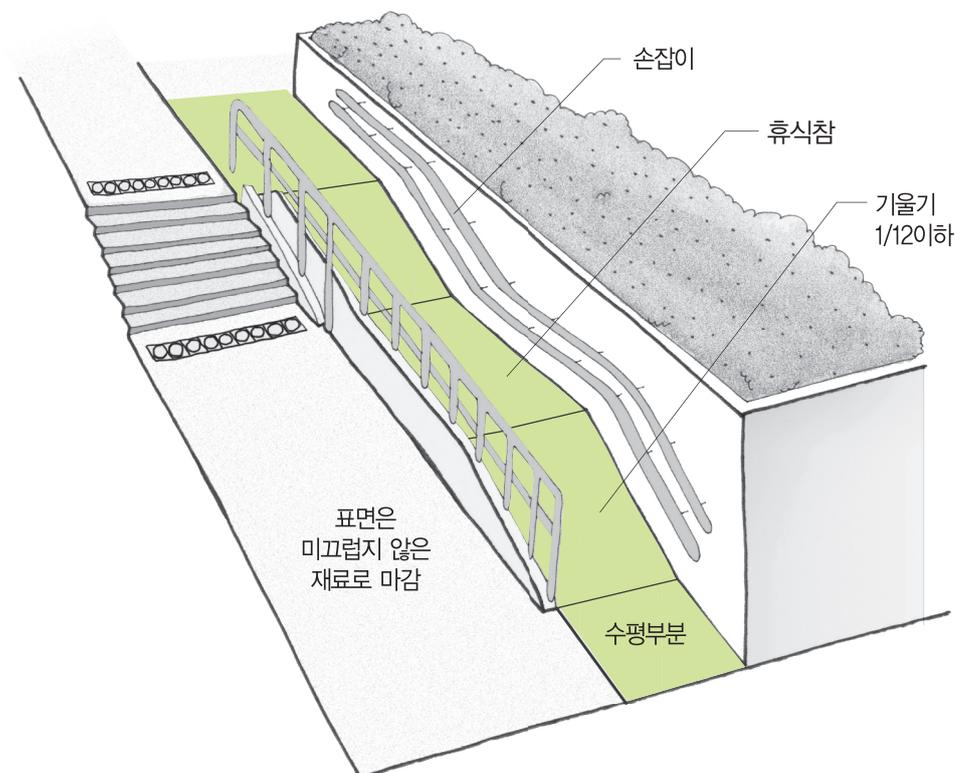
2) 노면의 마감

-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,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휠체어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,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사로 중심에서 좌우 45° 방향으로 줄눈이 가도록 마감하거나 엇갈린 무늬가 되도록 한다.
- 양측면에는 높이 5cm 이상의 휠체어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한다.
-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.
- 경사로의 상부에는 강철, 우천시 등에 휠체어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상부에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.



〈평탄하지 않은 노면〉

- 3) 경사로 식별
- 약시자, 노인, 어린이 등이 경사로 시작과 끝지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, 질감 등의 차이를 둔다.
 - 경사로 위치를 유도, 안내하는 표시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4) 형태 및 유효폭
- 경사로의 형태는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.
 -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복도와 동일하다.
 -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층간 이동을 위하여 경사로와 계단을 병행설치하는 것이 좋으며, 최소 유효폭은 1.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시작과 끝지점, 방향전환지점은 1.5m 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어야 한다.
- 5) 기울기
- 경사로의 기울기는 1/12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
 -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1/8까지 완화할 수 있다.
 - 첫째,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
 - 둘째, 높이 1m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/12 로 설치하기 어려울 것
 - 셋째,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 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
 - 1/12~1/18의 범위를 초과하는 완만한 경사로는 오히려 이동거리를 길게 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.



〈경사로의 구조〉

- 6) 경고용 마감재
 - 휠체어 사용자는 경사로로, 시각장애인은 계단으로 분리하여 유도하고 유효폭 1.5m 이하의 경사소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.
 - 경사로 이외의 접근로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유도가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, 휴식참 등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마감재를 달리하여 설치하되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.

- 7) 경사로 참
 -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.75m 이내마다 휴식을 위한 수평면(휴식참)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는 지점의 경사로 참은 반드시 수평면이어야 하며, 1.5mX1.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